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29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김석기 · 임이자 · 나경원
김기웅 · 이인선 · 성일종
윤상현 · 김태호 · 인요한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제4호 등).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심사 및 그 밖의 절차와 관련하여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를 “만 55세 이후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 ④ (생략) <u><신설></u>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심사 및 그 밖의 절차와 관련하여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u>⑤ · ⑥</u> (생략)	<u>⑥ · 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u>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u> 제9조에 따라 국적회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만 55세 이후에</u> ----- -----

복허가를 받은 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